



## 2 시험과목

구 분	직 렬 (직 류)	시 험 과 목
필기시험	속 기 직 (속 기)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행정학개론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경 위 직 (경 위)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행정법총론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방 호 직 (방 호)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사회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안 내 직 (안 내)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사회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건 축 직 (건 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통신기술직 (통신기술)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통신이론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관 리 직 (차량관리)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사 서 직 (사 서)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정보학개론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실기시험	속 기 직 (속 기)	논설체 및 연설체(2과목)
	경 위 직 (경 위)	100미터 달리기, 1,000미터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약력 (총 5종목)
	방 호 직 (방 호)	100미터 달리기, 1,000미터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약력 (총 5종목)
	관 리 직 (차량관리)	차량점검, 도로주행 (주차포함)
면접시험	추 후 공 고	

※ 실기시험 시험과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결 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li> <li>◦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응시자격 정지사유 관련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안내’ 참조)</li> </ul>		
연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이상인 자(2006. 12. 31. 이전 출생자)</li> <li>◦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li> </ul>		
학력 ·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 없음</li> </ul>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li> <li>-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li> <li>-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li> <li>-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li> <li>-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u>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u></li> </ul>		
자격증	속기직	◦ 한글속기 1·2·3급	
	사서직	◦ 1·2급 정사서, 준사서	
	관리직	◦ 운전면허: 제1종 대형면허	
신체조건	경위직 방호직	체 격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함
		시 력	◦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함
		청 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함)이어야 함

- ※ 연령 외 응시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 속기직, 서서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하며, 자격증 미소지자는 면접시험에 응할 수 없습니다(면접시험일 이전까지 취득예정자는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록화면에 취득예정 자격증명 및 취득예정일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5.응시원서 접수’ 참고).
- ※ 경위직, 방호직, 안내직, 건축직, 통신기술직은 별도의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 경위직·방호직 채용시험 응시자는 신체조건 관련 증빙서류로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게시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체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분		일 시		비 고
원 서 접 수		6. 17.(월) 09:30 ~ 6. 27.(목) 17:00		국회채용시스템 (관련서류 우편제출)
필기시험	장 소 공 고	8. 2.(금)		국회채용시스템
	시 험 일 자	8. 10.(토)		
	합격자 발표	9. 6.(금)		국회채용시스템
실기시험	장 소 공 고	9. 6.(금)		
	시 험 일 자	관리직	9. 23.(월)	
		경위직 방호직	9. 24.(화)	
		속기직	9. 26.(목)	
합격자 발표	9. 30.(월)			
면접시험	장 소 공 고	9. 30.(월)		국회채용시스템
	시 험 일 자	10. 15.(화) ~ 10. 18.(금)		
최종합격자 발표		10. 25.(금)		국회채용시스템

※ 응시원서 결제취소 마감일은 **7.2.(화) 17:00**입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상기 일정 외에 인·적성 검사 일정이 별도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합니다.

##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 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 원서접수등록 화면에서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기간 : 6. 17.(월) 09:30 ~ 6. 27.(목) 17:00 까지
  - ※ 6.27.(목) 접수 마감 시간은 17시 까지입니다. 단, 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 : 5,000원
  - ※ 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본인명의 계좌만 가능) · 카드결제 · 휴대폰결제 중 선택하여 결제
  - ※ 응시수수료 외에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계좌이체 · 카드결제 · 휴대폰 결제 비용)이 발생합니다.
  -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사전 결제하여야 하며 미결제 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단, 추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가 환불됩니다.**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사진 등록 : 원서접수 시 **본인 증명사진** 등록이 필요하니 **파일을 미리 준비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 중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용량 200KB 미만, 파일형식 jpg · jpeg · gif · bmp, 본인 식별이 명확히 가능한 증명사진
  - ※ 시험 당일 응시자 본인 확인용이므로, 모자 · 선글라스 · 마스크 착용 사진, 상반신 전체를 찍어 얼굴이 너무 작게 나온 사진, 화질이 낮아 희미한 사진, 얼굴이 일부만 나온 사진 등 얼굴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사용 불가

### 나. 자격증 등록 (직렬별 가산자격증 및 필수자격증)

- 필수자격증 및 직렬별 가산자격증을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록화면**에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취득할 예정인 경우에도 입력할 것).

자격증	"자격증명" (취득예정시: 취득예정 자격증명)	기관	"발급기관" (취득예정시: 취득예정 발급기관)
자격증번호	"자격증번호" (취득예정시: "취득예정")	취득일자	"취득일자" (취득예정시: 합격발표일자)

- ※ 필수자격증: **각 해당직렬 면접시험 시행일(2024. 10. 15.~10.18.) 이전까지** 취득할 예정인 경우  
[예시: 속기직 필수자격증]

자격증	한글속기3급	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번호	취득예정	취득일자	2024-10-15

- 자격증 등록기간
  - (1차) 원서접수기간: 6. 17.(월) ~ 6. 27.(목)
  - (2차) 추가등록기간: 8. 2.(금) ~ 8. 9.(금)

##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 6.17.(월) 9:30 ~ 7. 2.(화) 17:00 까지
  -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 ※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저소득층 해당자를 제외)이 불가합니다.
- **속기직, 사서직 응시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필수자격증 관련내용(자격증명,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취득일)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합니다(취득할 예정인 경우에도 입력할 것).
  - ※ 필수자격증: 속기직·사서직만 해당('7.가산점 적용 및 필수자격증' 참고)
- **가산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해당 여부 및 자격증 관련내용(자격증명,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취득일)을 정확히 등록하고 반드시 필기시험 OMR 답안지의 해당란에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표기** 하여야 합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경위직·방호직·사서직(일반)만 해당('7.가산점 적용 및 필수자격증' 참고)
  - ※ 가산점 적용 자격증: 원서접수 기간 및 추가등록기간에 등록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등록** 하여야 합니다.
  -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 경위직·방호직·사서직(일반)만 해당('8,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참고)
  -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시험정보-자료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시행 관련안내' ]**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가산점 적용 해당사항, 지방인재 여부 등) 오기로 인한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 출력기간 : 7. 15.(월) 9:30 ~ 10. 18.(금) 17:00 까지

## 6 편의지원 신청

### 가. 적용대상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아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사람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및 임신부,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아래 편의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항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항목	증빙서류 (각 1부)	비고
시각장애	공 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답안작성용 노트북 제공(논문형 필기시험)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인증명서 사본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논문형 1.5배) · 음성지원컴퓨터(이어폰 등 수화기 지참) · 점자문제지(희망자) ·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지참자)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1~2급 기존 3급 2호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존 3급 1,2호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논문형 1.5배) · 음성지원컴퓨터(이어폰 등 수화기 지참) · 점자문제지(희망자) ·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지참)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4급 2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4,5급 1호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5급 2호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6급 중 좋은 눈 교정시력 0.3 이하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6급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존 6급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항목	증빙서류 (각 1부)	비고	
뇌병변 장애	공 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답안작성용 노트북 제공(논문형 필기시험) · 휠체어 전용책상(높은 책상)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인증명서 사본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답안지 대필(선택형 시험)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 장애인증명서 사본		
지 체 장애	상 지	공 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답안작성용 노트북 제공(논문형 필기시험)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인증명서 사본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답안지 대필(선택형 시험)	·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존 4~6급
	하 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심하지 않은 사람	· 휠체어 전용책상(높은 책상)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존 1~6급
청 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심하지 않은 사람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존 2~6급	
기 타	특수 및 중복장애·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원본		
	임신부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높낮이 조절 책상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의사진단서 원본		

-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 제공(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로 확대된 문제지 제공
- 확대답안지 : B4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2종류 중 택1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위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 바랍니다(의사진단서(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
  - ※ 점자문제지는 최신 한국점자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반영하여 제공됩니다.

## 다. 편의지원 신청 증빙서류 구비시 유의사항

제출서류	유의사항														
① 신청서	◦ 별첨서식에 따른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 1부														
②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택 1)														
③ 의사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발급기관</b>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b>종합병원</b>(또는 상급종합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a href="http://www.hira.or.kr">www.hira.or.kr</a>) → [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반드시 해당되는 병원 확인 후 발급)</li> </ul> </li> </ul> </li> <li>◦ <b>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b>이 기재 되어 있는 <b>원본</b> 제출</li> <li>◦ <b>발급일자</b> : <b>2022. 6. 27.부터 인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 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됨.</li> </ul> </li> <li>◦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b>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b> (다음 3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상세하고 구체적인 해당 편의지원 필요성 기술</b>(아래 표 작성 예시 참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b>해당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또는/및 시야각 명기</li> </ul> </li> <li>② <b>시험 응시 시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b></li> <li>③ <b>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li> <li>- 임신부 응시자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li> <li>-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li> </ul> </li> </ol> </li> </ul> </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예시</th> </tr> </thead> <tbody> <tr> <td>시각장애</td> <td> <table border="1"> <tr> <td>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td> <td>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②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③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td> </tr> <tr> <td>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td> <td>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td> </tr> </table> </td> </tr> <tr> <td>뇌병변장애</td> <td>상기인은 ①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대상자의 수의적 근육 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td> </tr> <tr> <td>임신부</td> <td>상기인은 ①임신 30주, 필기시험 예정일을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자로서, ②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td> </tr> <tr> <td>기타</td> <td>상기인은 ①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td> </tr> </tbody> </table>		구분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예시	시각장애	<table border="1"> <tr> <td>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td> <td>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②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③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td> </tr> <tr> <td>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td> <td>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td> </tr> </table>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②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③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장애	상기인은 ①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대상자의 수의적 근육 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임신부	상기인은 ①임신 30주, 필기시험 예정일을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자로서, ②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기타	상기인은 ①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구분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예시														
시각장애	<table border="1"> <tr> <td>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td> <td>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②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③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td> </tr> <tr> <td>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td> <td>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td> </tr> </table>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②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③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②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③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장애	상기인은 ①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대상자의 수의적 근육 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임신부	상기인은 ①임신 30주, 필기시험 예정일을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자로서, ②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기타	상기인은 ①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진단서(소견서)가 필요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 등을 신청서(별첨서식)상의 빈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li> <li>- 시험시간 연장, 답안지 대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b>반드시 (상급)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소견서 불인정)</b></li> </ul> </li> </ul>															

## 라. 편의지원 서류 제출 및 편의지원 제공 여부 결정 절차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① 「편의지원 제공신청서」(별첨서식), ② 「장애인증명서」, ③ 「증빙서류」(‘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항목 및 증빙서류’ 참고)를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 봉투에 “9급공채 (편의지원)” 기재할것

- 서류 제출기한 : 6. 17.(월) ~ 6. 27.(목) (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의사진단서 등 서류검토 후, 장애유형 및 정도별로 시험시간 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등 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며, 신청 결과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게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8. 2. 게시예정).
- ※ 면접시험 관련 세부 편의지원 항목안내 및 신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인사과 채용담당(02-6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기타 유의사항

- 2023년도 이후 국회사무처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편의지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이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별첨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 1부만 제출). 단, 기 제출한 증빙서류 발급일이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 ※ 2023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를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기 제출 진단서 발급일이 2022. 6. 27.이전 이라면, 2024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편의지원 신청 시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의 진단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2022.6.27.부터 인정).

## 7 가산점 적용 및 필수자격증

###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및 적용범위
①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10% / 5%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
② 직렬별 적용 가산자격증	과목별 만점의 5% / 3% / 2%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①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등 ②직렬별 가산 자격증 소지자 간에는 상호 중복 가산이 가능합니다.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경위직·방호직·사서직(일반만 해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각 과목별 득점에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5%)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 (의사상자 등의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한 후, 반드시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 확인 :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직렬에만 적용됩니다.

### 다.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 직렬별 가산자격증 가산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2024. 8. 9.)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기간과 추가등록기간에 자격증 등록화면에 **관련내용(자격증명,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취득일)을 정확히 등록하고, 반드시 필기시험 OMR 답안지의 해당란에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표기** 하여야 합니다(자격증별 가산비율은 OMR답안지 뒷면 참고).
- 직렬별 가산 자격증은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됩니다.
- 경위직, 방호직, 건축직, 통신기술직 응시자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 (직류)	구분	가 산 자 격 증	가산 비율
경위직 (경위)	-	무도 3단 이상(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3%
		무도 2단(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2%
방호직 (방호)	-	무도 3단 이상(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3%
		무도 2단(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2%
건축직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5%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3%
통신기술직 (통신기술)	기술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5%
	기능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 이전취득)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무도분야 자격증은 아래의 단체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됩니다.

태권도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세계태권무도연맹, ITF태권도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유도	대한유도회
검도	대한검도회, 대한해동검도협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합기도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합기도총협회

## 라. 필수 자격증 (속기직, 사서직만 해당)

- 속기직, 사서직 응시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록화면에 관련내용(자격증명,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취득일)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합니다 (취득할 예정인 경우에도 입력할 것. '5.응시원서 접수' 참고).

## 마. 증빙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① 증빙서류(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증명서, 직렬별 가산 자격증 사본, 필수 자격증 사본)를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 봉투에 "9급공채 (가산점 / 필수자격증) : 응시번호" 기재할것

- 서류제출 기한: 8. 12.(월) ~ 8. 15.(목) (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 속기직, 사서직의 경우 서류제출 기한 이후에 발급되는 필수자격증은 면접일에 사본 제출
-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해당란에 정보를 잘못 기재 또는 누락하는 경우, 불이익(성적·가산점 불인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시 등록내용과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기입내용이 다른 경우 OMR답안지 기입 내용에 따릅니다.
- 필요시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8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경위직·방호직·사서직(일반)만 해당)

### 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하며, 장애인 구분모집은 적용 제외)

### 나. 지방인재의 범위

-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24. 6. 27.) 기준)
  -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시험정보>자료실>“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안내”]**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인원 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입니다.
-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 라. 실시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의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되,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추가합격자 결정 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마. 지방인재 증빙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서류제출 기한: **8. 12.(월) ~ 8. 15.(목)** (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① 「지방인재 응시자 학력기술서」(별첨서식), ② 지방인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 봉투에 “9급공채 (지방인재) : 응시번호” 기재할것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등록 하고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찍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지방인재 증빙서류의 경우 출신학교의 인터넷 증명서 발급을 이용한 증명서도 제출 가능).
- 제출한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9 기타사항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규정에 따릅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4·5 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회인사규칙」 제17조의3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국회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여부 판단, 합격 결정 및 기타 시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응시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6788-2081)으로 연락주시거나, 국회채용 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시험정보] 및 [시험안내]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

<p><b>■ 장애유형</b></p>	<p><b>시각 장애</b></p>	<input type="checkbox"/>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input type="checkbox"/>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input type="checkbox"/>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input type="checkbox"/>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input type="checkbox"/>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input type="checkbox"/>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input type="checkbox"/>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input type="checkbox"/>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p><b>뇌병변 장애</b></p>	<input type="checkbox"/>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input type="checkbox"/>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input type="checkbox"/>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p><b>지체 장애</b></p>	<input type="checkbox"/> 상지지체(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input type="checkbox"/> 상지지체(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input type="checkbox"/> 하지지체																	
	<p><b>청각 장애</b></p>	<input type="checkbox"/> 청각 장애																	
	<p><b>기 타</b></p>	<input type="checkbox"/> (사유를 자세히 기재 )																	
<p><b>■ 신청사유</b></p>	<p>※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p>																		
<p><b>■ 신청항목</b></p> <p>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항목 내에서 복수신청 가능</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border: none; width: 50%; vertical-align: top;"> <input type="checkbox"/> 음성지원 컴퓨터(이어폰 등 수화기 지참자)  <input type="checkbox"/> 답안작성용 노트북 제공(논문형 시험)  <input type="checkbox"/>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input type="checkbox"/> 별도 시험실(좌석간격 조정)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전용책상(높은 책상)  <input type="checkbox"/> 높낮이 조절 책상  <input type="checkbox"/>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input type="checkbox"/>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논문형 1.5배)  <input type="checkbox"/>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임신부 등 편의지원 항목 해당자)                 </td> <td style="border: none; width: 50%; vertical-align: top;"> <input type="checkbox"/> 축소문제지(82%, 10 point, 확대독서기 지참자)  <input type="checkbox"/> 확대문제지(118%, 14 point)  <input type="checkbox"/> 확대문제지(150%, 18 point)  <input type="checkbox"/> 확대답안지(B4규격 표기형)  <input type="checkbox"/> 확대답안지(B4규격 기입형)  <input type="checkbox"/> 점자문제지  <input type="checkbox"/>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지참자)  <input type="checkbox"/> 답안지 대필(선택형 시험)                 </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음성지원 컴퓨터(이어폰 등 수화기 지참자) <input type="checkbox"/> 답안작성용 노트북 제공(논문형 시험) <input type="checkbox"/>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input type="checkbox"/> 별도 시험실(좌석간격 조정)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전용책상(높은 책상) <input type="checkbox"/> 높낮이 조절 책상 <input type="checkbox"/>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input type="checkbox"/>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논문형 1.5배) <input type="checkbox"/>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임신부 등 편의지원 항목 해당자)	<input type="checkbox"/> 축소문제지(82%, 10 point, 확대독서기 지참자) <input type="checkbox"/> 확대문제지(118%, 14 point) <input type="checkbox"/> 확대문제지(150%, 18 point) <input type="checkbox"/> 확대답안지(B4규격 표기형) <input type="checkbox"/> 확대답안지(B4규격 기입형) <input type="checkbox"/> 점자문제지 <input type="checkbox"/>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지참자) <input type="checkbox"/> 답안지 대필(선택형 시험)													
<input type="checkbox"/> 음성지원 컴퓨터(이어폰 등 수화기 지참자) <input type="checkbox"/> 답안작성용 노트북 제공(논문형 시험) <input type="checkbox"/>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input type="checkbox"/> 별도 시험실(좌석간격 조정)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전용책상(높은 책상) <input type="checkbox"/> 높낮이 조절 책상 <input type="checkbox"/>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input type="checkbox"/>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논문형 1.5배) <input type="checkbox"/>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임신부 등 편의지원 항목 해당자)	<input type="checkbox"/> 축소문제지(82%, 10 point, 확대독서기 지참자) <input type="checkbox"/> 확대문제지(118%, 14 point) <input type="checkbox"/> 확대문제지(150%, 18 point) <input type="checkbox"/> 확대답안지(B4규격 표기형) <input type="checkbox"/> 확대답안지(B4규격 기입형) <input type="checkbox"/> 점자문제지 <input type="checkbox"/>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지참자) <input type="checkbox"/> 답안지 대필(선택형 시험)																		
<p><b>■ 인적사항</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성 명</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연 락 처</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집</td> <td style="width: 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민등록번호</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휴대폰</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E-mail</td> <td></td> <td></td> </tr> </table>				성 명		연 락 처	집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E-mail		
성 명		연 락 처	집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E-mail																	

본인은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기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편의지원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회사무처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하거나 제3자로부터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인)

국회사무총장 귀하



## ■ 작성 요령

### 1. 인적사항

- 응시번호에는 시험 응시번호를 기재하며,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하고, E-mail과 수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등을 기재

### 2. 학력사항

- 고교부터 대학까지의 모든 학력사항을 시간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하되, 취학의무 면제 등으로 학력이 없는 경우는 “학력없음”, 최종학력이 중학교 이하인 경우는 최종학력을 기재
- 기간: 입학 ~ 졸업/재적(재학, 휴학)/제적(중퇴) 기간을 연, 월, 일 기재
  -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경우 연, 월만 기재해도 무방
  - 편입학한 경우는 입학 연, 월, 일 앞에 ‘(편입)’ 을 표시하여 기재  
<작성 예> : (편입) 2004. 3. 1. ~ 2007. 4. 6.
  - 작성일 현재 재적(재학, 휴학) 중인 경우는 재적일을 작성일까지로 기재
- 학교명: 학교명칭을 모두 기재하되, 지방대학으로 인정되는 분교인 경우대학명에 캠퍼스까지 기재
- 전공: 졸업·재적 증명서 등에 표기되는 전공을 기재
- 졸업 / 재적 / 제적: 기재한 학력이 작성일 현재 졸업인 경우는 졸업으로, 재학·휴학 중인 경우는 재적(在籍)으로, 중퇴 등 제적된 경우는 제적(除籍)으로 표기
- 학교 소재지: 17개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중 하나로 표시
  - ※ 학교 소재지를 기재하되 분교는 분교 소재지로 기재

### 3. 제출방법

- 서식에 따라 작성·출력한 후 개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학력증명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송부할 것
  - ※ 작성 시 휴면명조체, 12(글씨크기)로 할 것. 여백이 부족한 경우 글씨 크기를 작게 할 수 있음.
- 제출: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 ※ 봉투에 “9급공채(지방인재) : 응시번호” 기재할 것
- 문의: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02-6788-2081)